

# 「전북특별자치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공고

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근로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3월 4일

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

## 1 사업목적

- 육아휴직 대체인력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, 인력난 해소와 업무 연속성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
- 기업의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, 근로자의 경력 유지 및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실현

## 2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전북특별자치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
- 접수기간 : 2026. 3. 4. ~ 상시모집 \*예산 소진 시까지
- 지원규모 : 70명 정도 (예산 소진시 종료)
- 지원금액 : 최대 200만원 지급(6개월간)

기간	1개월	2개월	3개월	4개월	5개월	6개월
금액(월)	300,000	600,000	1,000,000	1,300,000	1,600,000	2,000,000

- 지원대상 :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<sup>우선지원대상기업</sup> 사업장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

※ 지원 제외대상 (참여자격 배제)

- ① 참여기업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자
- ② 사업주 본인,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·자매 등 관계에 있는 자
- ③ 정부·지자체 등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
-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  -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지원 가능
- ⑤ 고용보험 미가입자 ⑥ 본 사업 참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

- 지원내용 :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<sup>우선지원대상기업</sup> 사업장에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
  - 기업당 근로자 수 제한 없음
  - 대상기간은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에 한정
  - 이후 일반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
    - ⇒ 고용노동부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결과 통보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
- 지급방법 : 대체인력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 (우리원→근로자)
  - \* 동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예정으로, 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받으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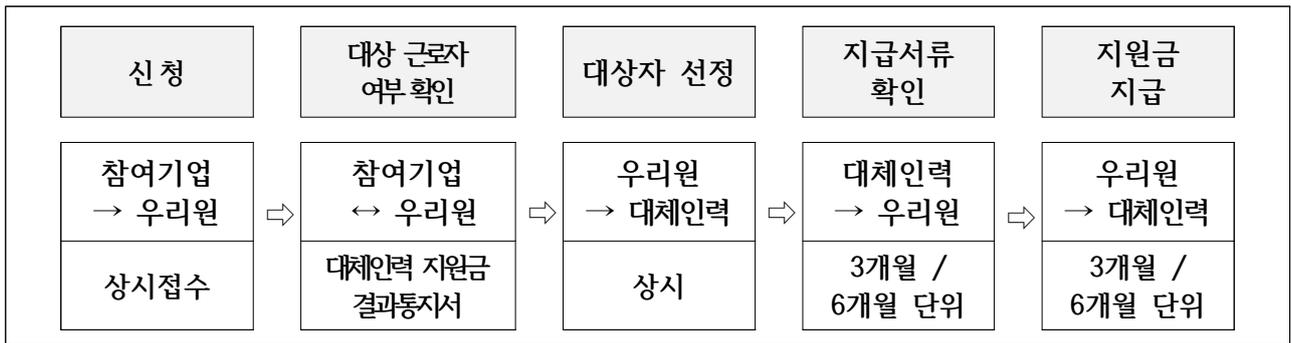
### 3 신청방법 및 참여 근로자 선정

- 신청방법: 이메일 접수 leeanseon@jbba.kr
- 신청서류: 홈페이지 다운로드
  -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<https://www.jbba.kr>
  -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<https://www.1577-0365.or.kr>
- 제출서류

연번	신청시 제출서류(자격요건 및 3개월 근속 확인)	비고
1	지원금 신청서 1부	[서식1]
2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(기업용, 근로자용) 각 1부	[서식2,3]
3	4대 사회보험 가입자 사업장 명부 또는 고용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1부	고용기간 확인용
4	대체인력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	
5	근로자 통장 사본 1부	근로자 명의
6	대체인력 지원금 지급신청 결과 통보서 1부	고용24 발급(기업)

연번	추가 제출서류(6개월 근속 확인)	비고
1	지원금 신청서 1부	[서식1]
2	4대 사회보험 가입자 사업장 명부 또는 고용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1부	고용기간 확인용
3	대체인력 지원금 지급신청 결과 통보서 1부	고용24 발급

□ 선정절차



#### 4 유의사항

- 접수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를 기재할 시에는 무효로 처리되며,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고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, 해당 참여근로자로부터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며, 지원금 지급은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취업팀 ☎063)280-1013 / leanseon@jbba.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첨부자료

- [서식 1] 지원금 신청서
- [서식 2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기업용)
- [서식 3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근로자용)
- [붙임]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표

[서식1]

-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-

# 지 원 금 신 청 서

기 업 명		대 표 자	
사업자등록번호		담 당 자 명	
담당자이메일		담당자연락처	
주 소			
육 아 휴 직 자			
성 명		휴 직 기 간	
대 체 인 력 자			
성 명		생 년 월 일	
근 무 기 간		연 락 처	
지원금 신청			
신 청 기 간	202 . . . ~ 202 . . .		
신 청 금 액			
입 금 계 좌	계좌번호 : (금융기관: ) (예금주: )		
<p>“위와 같이 「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」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며, 해당 동일기간 내 정부 및 지자체,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바 없습니다. 또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”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6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참여근로자 : (서명 또는 날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</p>			

-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-  
**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** (기업용)

사 업 명	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			
기 업 명				대표자명
대표자명	1. 수집·이용	2. 제공	3. 고유식별정보처리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 (자필서명)
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

**1.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**

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귀하(귀사)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기 위하여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제15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.

- ① 보유·이용기간 : 사업 신청일 ~ '26. 12. 31.
- ② 수집목적 : 지원금 적정성 판단 및 사업지원금 안내 및 사후관리 등
- ③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
사업장명, 대표자 성명(연락처), 사업자등록번호(법인번호), 고용보험 기업정보(근로자, 피보험자수), 고용보험 장려금 지원정보, 지원대상 근로자(대체인력) 성명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, 고용보험 가입정보 등

**2.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**

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(귀사)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귀하(귀사)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.

-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고용노동부(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 포함), 전북특별자치도,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- ②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: 지원대상자 선정(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확인)
- ③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: 사업장명, 대표자 성명, 사업자등록번호(법인번호), 지원대상 근로자(대체인력) 성명, 주민등록번호
-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: 신청자에 대한 요건확인 및 지급처리완료시  
(파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)

**3.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**

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(귀사)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- ① 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
- ② 수집·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: 대표자 성명, 사업자등록번호(법인번호), 대체인력 근로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계좌정보
- ③ 고유식별정보의 보유·이용기간 : 동의일로부터 3년

4. 본인은 귀하의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고 이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경우, 고용노동부의 전산망을 통해 귀하의 기업 및 대체인력자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.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자료가 본 지원사업의 절차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.

5. 본인은 상기 1~4번 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, 거부하면 참여인력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 수령이 불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.

2026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**전북특별자치도지사·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**

-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-

**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** (근로자용)

사 업 명	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			
기 업 명				대표자명
대표자명	2. 수집·이용	2. 제공	3. 고유식별정보처리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 (자필서명)
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

**1.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**

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귀하(귀사)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기 위하여 『개인정보 보호법』제15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.

- ① 보유·이용기간 : 사업 신청일 ~ '26. 12. 31.
- ② 수집목적 : 지원금 적정성 판단 및 사업지원금 안내 및 사후관리 등
- ③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
사업장명, 대표자 성명(연락처), 사업자등록번호(법인번호), 고용보험 기업정보(근로자, 피보험자수), 고용보험 장려금 지원정보, 지원대상 근로자(대체인력) 성명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, 고용보험 가입정보 등

**2.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**

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(귀사)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귀하(귀사)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.

-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고용노동부(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 포함), 전북특별자치도,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- ②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: 지원대상자 선정(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확인)
- ③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: 사업장명, 대표자 성명, 사업자등록번호(법인번호), 지원대상 근로자(대체인력) 성명, 주민등록번호
-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: 신청자에 대한 요건확인 및 지급처리완료시  
(파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)

**3.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**

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(귀사)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- ① 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
- ② 수집·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: 대표자 성명, 사업자등록번호(법인번호), 대체인력 근로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계좌정보
- ③ 고유식별정보의 보유·이용기간 : 동의일로부터 3년

4. 본인은 귀하의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고 이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경우, 고용노동부의 전산망을 통해 귀하의 기업 및 대체인력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.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자료가 본 지원사업의 절차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.

5. 본인은 상기 1~4번 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, 거부하면 참여인력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 수령이 불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.

2026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전북특별자치도지사·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

순	산업분류	분류기호	상시근로자 수 (*해당기준 이하)
1	○ 제조업 (산업용 기계 및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분류)	C	500
2	○ 광업	B	300
	○ 건설업	F	
	○ 운수업 및 창고업	H	
	○ 정보통신업	J	
	○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(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분류)	N	
	○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	○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200
	○ 도매업 및 소매업	G	
	○ 숙박업 및 음식점업	I	
	○ 금융업 및 보험업	K	
	○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4	○ 그 밖의 업종		100